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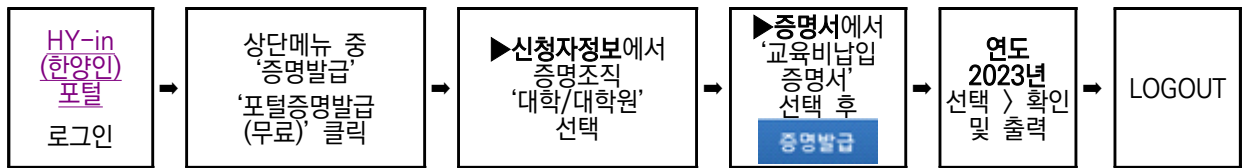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4.01.15.(월) ~

2. 발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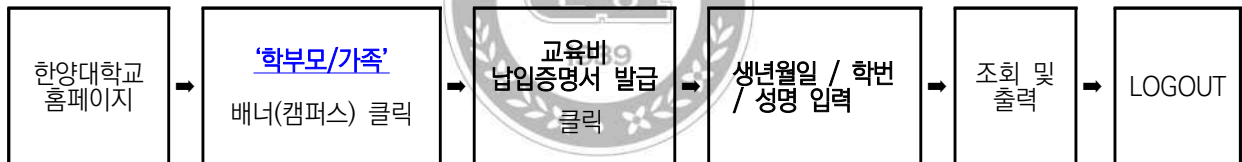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학부모용)에서 출력하는 경우 :



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4.01.15.(월)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주민센터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 2024년 1월 15일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장학금 등(B) :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장학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⑫장학금 등 수혜액(B) - '학비감면 등1')에 포함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포상성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⑫ 장학금 등 수혜액(B)'에 반영됨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2023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됨

[(14 총교육비(A) 계) - (15 장학금 등 수혜액 (B) 계)] = ⑫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예시

납부년도(월)	구분	총교육비(A)	장학금액(대출금포함)_ (B)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C)
2023.2.	수업료	4,000,000	5,000,000	0
2023.8.	수업료	4,000,000	3,000,000	1,000,000
		8,000,000	8,000,000	0

다.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마. 겨울학기 계절제 현장실습수업 등록금

- 계절학기 수업료는 수업기간 종료 후 해당부서에서 수업료처리를 완료하는 시점부터 확인 가능
- 겨울학기 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수업료 납부 차수에 따라 수강료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함(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미반영시 HY-in 포털에서 현장실습수업료(2023-겨울학기 수업료) 반영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하여 연말정산에 사용)

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4.01.15.(월))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

사.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함

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5. 대학(원)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

가. 2023 소득세법령 개정으로「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나. 2023.1.1.~12.31에 본교 대학(원)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함 (단, 전형료접수기간이 2024.1월1월이후 종료될 경우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다. 2023년도 처음시행으로 학부 정시, 편입학, 대학원신입학의 경우 2022.12.1.일 이후 전형료 접수자도 2023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발생시 해당금액 제외

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결제대행 사이트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가능

마. 전형료 관련 사항은 입학팀,국제팀, 각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관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4312
- 계절학기 관련[학사운영팀] : 서울 02)2220-1770 / ERICA 031)400-4217
- 현장실습수업료 : 서울 현장실습지원팀 02)2220-2092 / ERICA 현장실습지원센터 031)400-4394
- 군 e-러닝 관련[교육혁신팀] : 서울 02)2220-1515
- 입학 전형료 관련 : 학부- 입학팀(S/E), 대학원 - 대학원 교학팀 및 각 전문특수대학원 행정팀
외국인 - 국제입학팀(S/E)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한양대학교 총무처 재무팀